

2012 계약심사 사례집



Contents

2012. 계약심사 사례집

I 계약심사제도 개요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5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5
3. 계약심사대상	5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8
5. 계약심사 추진성과	9
6. 2013년 계약심사 계획	11

II 분야별 심사사례

1. 토목공사	15
2. 건축공사	47
3. 기계설비공사	67
4. 전기·통신·소방공사	81
5. 기술용역	93
6. 일반·학술용역	101
7. 물품(제조·구매·인쇄물)	115
8. 군·구 주요사례	125

III 부록

1.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43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계약심사 운영요령) ..	155
3. 분야별(공사·용역·물품) 참고자료	233



I . 계약심사제도 개요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3. 계약심사대상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5. 계약심사 추진성과
6. 2013년 계약심사 계획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3. 계약심사대상

- 심사대상 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의회사무처
 -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군·구(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 심사대상 사업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기술용역	○ 추정금액 2억원이상
일반·학술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세

○ 물품구매 계약심사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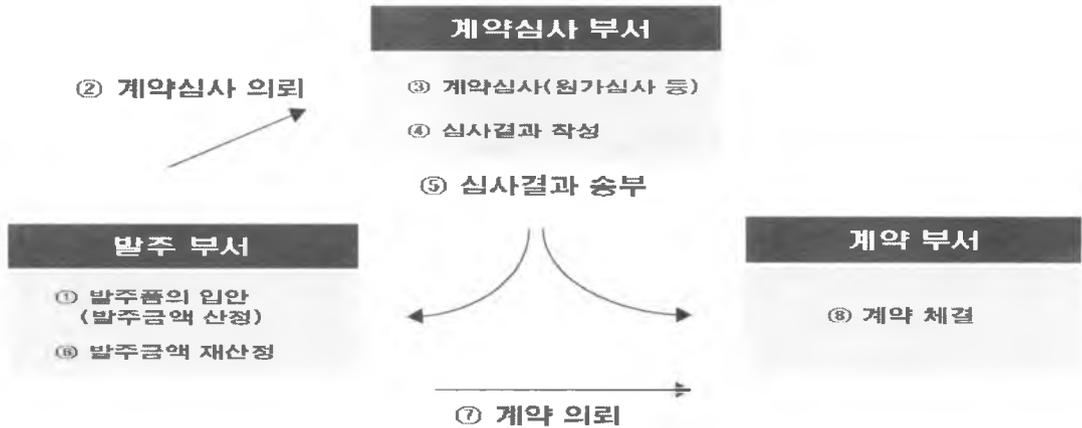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전년도 평균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한 사업
-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2013. 인천광역시 지정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

표시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1	의약품 구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비 고시	재지정
2	전자저널 구매	- KERIS, KESLI 등 컨소시엄기관에서 전자저널 구독조건 고시	재지정
3	동물·식물 구매	- 가격산정 기준 불분명	재지정
4	차량구입	- 제조사에서 차량금액 결정 후 공개	재지정
5	최저가입찰에 의한 도서구매	- 정가가 있는 도서중 낙찰 하한율이 없는 경우	재지정
6	특정사 물품구매	- 제조사 독점 공급으로 대체품이 없거나 판매(수입)업체가 1곳인 경우	신규
7	PET병 용기 구매	- 상수도사업본부의 PET병의 모형틀 보유 업체 1곳으로 공정한 가격 경쟁이 불가	신규
8	동일 물품 재구매	- 계약심사에 의거하여 구매한 물품을 당해연도에 구매한 금액으로 재구매	신규
9	S/W 라이선스 구매	- 심사1건이 Microsoft(윈도우즈, office) 한글과 컴퓨터(한글, 한컴오피스), 백신(알약, V3, 바이러스체이서)의 S/W라이선스 구매 또는 계약연장	신규 (보완)
10	차량보험가입 용역	- 보장내용 및 범위설정으로 실효성 없음	신규
11	행사용역	- 행사는 출연자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며 TV 방송프로그램 방영, 홍보 등의 방법이나 횟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심사곤란	신규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발주부서)
③ 심 사	◆ 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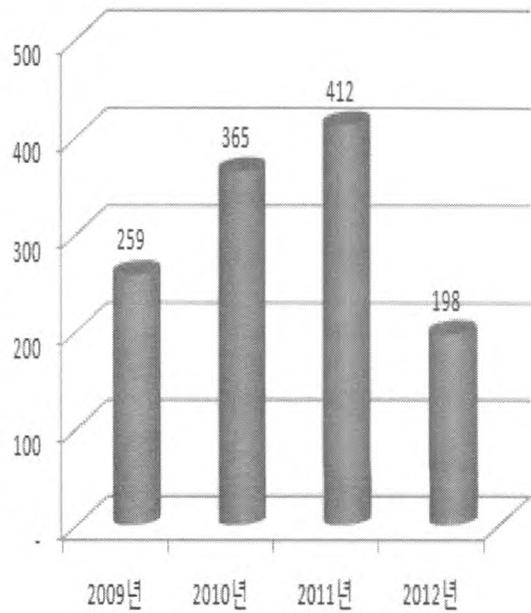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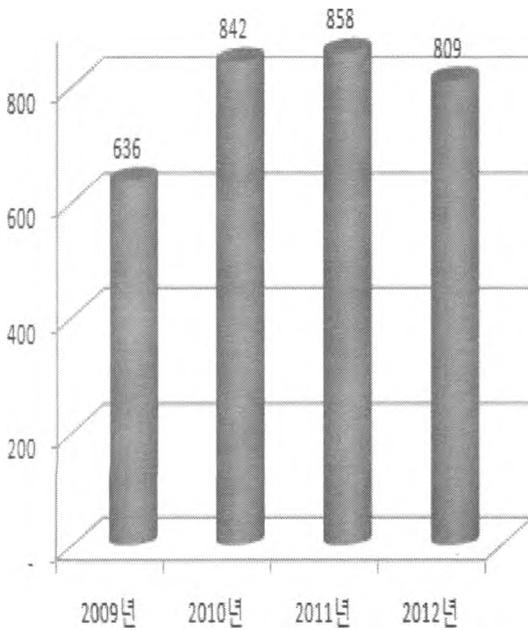
5. 계약심사 추진성과

○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총괄)

(단위 : 억원)

연 도 별	건 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009년	636	5,304	5,045	259	4.9%
2010년	842	6,210	5,845	365	5.9%
2011년	858	7,103	6,691	412	5.8%
2012년	809	4,236	4,038	198	4.7%

【연도별 증감 추이】



< 심사건수 >

< 절 감 액 >

○ 2012년 사업별 심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심사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비고
합 계	809	4,236	4,038	198	4.7%	
공 사	183	2,127	1,997	130	6.1%	
기술용역	54	712	706	6	0.9%	
일반용역	176	867	832	35	4.0%	
물 품	396	530	503	27	5.1%	

○ 2012년 발주기관별 심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심사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비고
합 계	809	4,236	4,038	198	4.7%	
본 청	338	1,682	1,602	80	4.8%	
지방공기업	208	868	849	19	2.2%	
출연기관	29	153	144	9	6.0%	
군 · 구	234	1,533	1,443	90	5.9%	

6. 2013년 계약심사 계획

○ 절감 목표율 : 5%(약 285억원)

- 총 괄

(단위 : 건/억원)

구 분	합 계		공 사		용 역		물 품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12	5,717	119	4,109	189	1,128	304	480	
회계계약심사과	463	1,249			159	769	304	480	76%
건설심사과	149	4,468	119	4,109	30	359			24%

○ 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 건/억원)

구 분	합 계		공 사		용 역		물 품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12	5,717	119	4,109	189	1,128	304	480	
시	260	2,331	33	1,470	103	682	124	179	41%
공기업·출연기관	218	1,579	9	929	77	406	132	244	28%
군·구	134	1,807	77	1,710	9	40	48	57	31%

○ 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 건/억원)

구 분	합 계		공 사		용 역		물 품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12	5,717	119	411	189	113	304	48	
1 분기	405	3,737	78	2,699	141	769	186	269	65%
2 분기	117	1,148	30	826	27	199	60	123	20%
3 분기	61	712	9	553	10	119	42	40	13%
4 분기	29	120	2	31	11	42	16	4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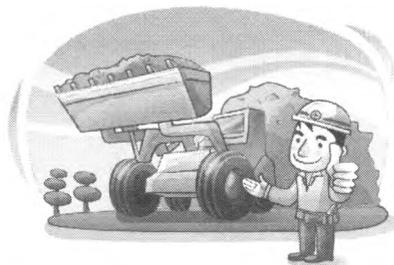


Ⅱ . 분야별 심사사례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전기·통신·소방공사
5. 기술용역
6. 일반·학술용역
7. 물품(제조·구매·인쇄물)
8. 군·구 주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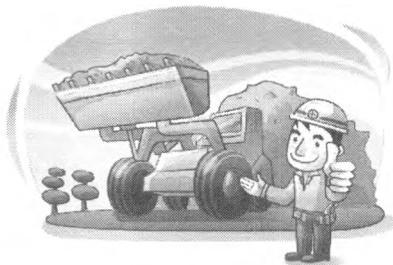
1. 토목공사

● ○○소하천 정비공사	17
● ○○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	18
● ○○○○년도 ○○○○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19
● ○○동 ○○-○○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20
● ○○산업단지 고가차도 상수도 이설공사	21
● ○○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	22
● ○○○○년 사방사업	23
● ○○○ ○○○ 위령탑 추모의장 조성사업	24
● ○○○○년 사방사업(계류보전)	25
● ○○○○년 사방댐 조성관리사업	26
● ○○공원 일원정비사업	27
● ○○○○년 ○○수도 개보수공사 연간단가	28
● ○○~○○간 경사완화공사	29
● ○○2 방조제 보수공사	30
● ○○3-1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31



1. 토목공사

- ○○방조제 개보수공사 32
-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 33
- ○○사랑길 테마코스 인도설치공사 34
- ○○철로변 걷고 싶은거리 조성공사 35
-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36
- ○○동 산○○번지~○○마을(1구간)도로개설공사 37
- ○○○ 가는길 보행경관 형성사업 38
-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39
-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40
- ○○방조제 개보수공사 41
- ○○아파트 단지내 포장공사 42
- ○○의 강 선도사업 43
- ○○ 체험마을 조성 44
- ○○ 생활용수 개발사업 45
- ○○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46



○○소하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공간 조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972,680	4,737,287	235,393	4.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교량의 말뚝 본수 4열을 3열로 조정
- 환경관리비와 세륜세차시설비 중복 적용으로 세륜세차시설비 삭제
- 소형교량으로 교명주 교명판 삭제
- 낙차공 설치를 기성제품으로 적용한 것을 현장내 사석으로 유용

○○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B=24~27,(일반 4차로) L=236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292,000	4,709,000	583,000	11.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PET+Sand MAT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추가성토로 변경적용
- 연약지반 개량공법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계측비용 삭제
- 과다 계상된 가설사무실 제작장 부지 면적 및 임대료 재산정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년도 ○○○○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유효기간만료 수도미터 508건, 부적정 계량기교체 148건
기타(고장, 동파, 시험 등) 544건
- 사업기간 : 년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81,101	501,699	79,402	13.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계량기 폐전 등 철거품으로 설치품의 50%를 계상하였으나 재활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기계설비공사 1-5)를 적용하여 40% 적용
- 계량기 교체시(해체 후 재취부) 설치품의 배관공 및 보통인부를 150% 적용하였으나 배관공 133%, 보통인부 119%를 적용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동 ○○-○○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8m(일반 2차로) L=714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235,100	970,650	264,450	21.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철근콘크리트 깨기를 기계인력(9:1)품을 기계품(100%)으로 변경 적용
- 2012년도 개정사항(CCTV, 하수도수밀시험, 전석쌓기) 반영
- 과다 계상된 현장사무실 및 가설창고 면적재검토 및 경비목으로 재산정
- 교통표지판 설치품에 포함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품 삭제
- 도로포장 공종별 단가산출근거 시공량을 표준품셈 시공량으로 재산정

○○산업단지 고가차도 상수도이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D500~100mm L=144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73,177	470,000	303,177	39.3%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부단수차단(500, 400, 200, 100) 등 특수공정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품에 대하여 경비목으로 통합적용
- 가시설(Sheet-Pile) 강판구멍뚫기 인력품을 기계품으로 변경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 기타 착안사항

- 연약지반으로 가시설 시공이 필요한 제수변실 4개소중 이설공사후 제수변 통제기능이 낮은 제수변실 3개소는 제수변보호통으로 시공토록 변경

○○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B=8.25m L=69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791,150	1,638,300	152,850	8.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철근콘크리트 깨기 철근공제량 50kg 고재금액 감액계상
- 중기기초자료 건설기계조장 0.2인 포함품 삭제
- 구조물터파기 07㎡ 기계인력(9:1) 단가중 중기반장품 삭제
- 석축찰쌍기품 2012년도 개정품 적용

○○○○년 지방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계류보전 1식, 삼방댐 2개소, 사면보호공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63,645	333,895	29,750	8.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남동구, 부천시 기초자재(모래, 자갈) 단가를 저렴한 부평구 단가 적용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 조경시설물 철근가공조립공정 보통 → 간단으로 변경
- 야면석 쌓기 등 뒷채움재 노무비 삭제
-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공 1.29인 → 0.85인

○○○ ○○○ 위령탑 추모의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경화토 포장 2,195㎡, 섬잣나무 외 11종 3,393주
목교 및 편의시설 1식, 근린생활시설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01,861	731,563	70,298	8.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측구수로관 수량 재 산정(2M기준) 60본 → 30본 변경 적용
- 주철관 부설 및 접합 수량 재산정(6M기준) 71개소 → 11.9개소 변경적용
- 목교 잡철물 제작 아연도금 품 삭제(조합 페인트 중복)적용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 수목 등 자재운반비용 재 산출 307톤 → 232톤

○○○○년 지방사업(계류보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석기슭 막이 164M, 굴림석 기슭막이 678M
야면적 기슭막이 412M, 야면석 바닥막이 6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26,380	462,390	63,990	12,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전석기슭막이 몰탈품 삭제 적용
- 삼산지역 중기 및 모래운반 거리 40km → 14km 변경적용
- 고천지역 중기 및 모래운반 거리 40km → 9km 변경적용
- 뒤채움, 고임돌 등 현장 채집 기계적용 효율비율 상향조정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년 사방댐 조성관리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사방댐조성 3개소, 굴림석 기슭막이 330M
야면석 기슭막이 156M, 야면석 바닥막이 7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39,320	375,190	64,130	14.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삼산 굴림석 및 야면석 수량 재산출 적용
- 사급 자재단가를 조달청 가격정보(관급자재)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 가공 굴림석 쌓기폼 → 야면석 찰쌓기폼 변경 적용
- 합판거푸집 품 3회 → 4회 적용
- 레미콘 타설 무근(소형)구조물 → 무근 구조물 변경 적용

○○공원 일원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목식재 1식, 옹벽 및 파고라 시설물 설치 1식
아스콘 및 철평석 포장 1식, 사면부 정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80,000	438,725	41,276	8.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철평석계단 설치를 위한 화강석판석 깔기 → 대리석판석 깔기 단가 적용
- 데크설치를 위한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잡철물 설치 단가 적용
- 면고르기 굴삭기 0.15, 보통인부 0.05 → 굴삭기0.015, 보통인부0.005 적용
- 자연석기계 놓기 조적공 → 조경공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년 ○○수도 개보수공사 연간단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상수도관로 개보수 $\phi 15\sim 250\text{mm}$ L=2,000m
- 사업기간 : 2012 .1. 1 ~ 12. 31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210,133	171,567	38,566	18.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소규모아스팔트포장 복구 품의 노무비 할증 삭제 적용
- 인력터파기 품의 잡 재료비 삭제 적용
- 수도관 매설 및 접합부분의 노무비중 배관공(수도) → 배관공 적용
- 플랜지 접합 및 철거, 부단수 분기공 과다 적용노무비 수량 → 감소 적용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 기타 착안사항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확인 시행

○○~○○간 경사완화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선형개량 L=1,040m B=10.75m
- 사업기간 : 2009. 4. 30 ~ 2012. 2. 16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577,014	4,526,028	50,986	3.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09년 계약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별개제근 및 별목 등 내역서 산출물량 감액에 따른 수량감액 적용
- 철근 및 시멘트 운반 수량감액 적용
- 중기사용 환율단가 및 관급자재대 조달수수료 변경 적용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2 방조제 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방조제 개보수 L=120m, 토공사 3,858㎡
블록설치 1,606㎡, 사석채움 384㎡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97,660	375,253	22,407	5.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사급자재(모래, 자갈, 시멘트) 중복자재할증 삭제 수량 적용
- 토공작업의 기계적용경비 변경 적용
- 중기사용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 발표단가로 변경적용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1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토공사 2,717㎡, PC암거 108M,
 흡관(D300~700) 476m, 아스팔트포장 1,566㎡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20,710	307,649	13,061	4.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기존 구조물 헐기(무근30cm) 수량 50㎡ → 45㎡ 감액 적용
- 2012년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기준에 따라 노임 수량 감액 적용
- 공사관련 안전표지 손율 75% → 30% 감액 적용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방조제 개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방조제 보수공사 L=900m 배수갑문공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612,000	1,264,121	347,879	21.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공포단가로 변경적용
- 블록쌓기의 숙채옴품을 인력에서 기계품으로 조정
- 각종 운반시 T5 시간을 인력 3.77시간에서 0.5시간으로 변경 적용
- 철근콘크리트 깨기 수량에 철근 고재량 산정하여 제외 적용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스콘포장, 물량장 덧씌우기, 목재 및 차도 펜스설치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36,680	741,751	194,929	20.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물량을 물량산출근거에 착오 수정으로 143,695천원감액
- 콘크리트 포장시 포설인건비 이중적용품 제외 적용
- 목재휨스 설치 일당 20경간설치 단가로 변경적용
- 육상 운반시 도서할증 제외 적용

○○사랑길 테마코스 인도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스콘포장, 보도포장, 인도교 설치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73,780	464,380	109,380	19.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무근콘크리트 깨기를 인력품을 기계품으로 변경 적용
- 사토 운반시 덤프운반속도를 20km에서 30/35km으로 변경 적용
- 현지여건이 연약지반이 아니므로 흙관 기초 콘크리트 제외 적용
- 횡배수관 접합방식을 모르타르접합에서 고무링접합으로 변경 적용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화강석 포장, 수목식재, 정원 설치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46,600	443,191	103,409	18.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물 단위 착오로 l 당 단가를 m 단가로 변경 적용
- 화강석 판석 자재 단가 조정
- 판석 붙임품에 모르타르 비빔품 이중적용으로 제외 적용
- 목재가공설치품은 중구조에서 하구조로 변경 적용

○○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사방공사 위험수목 별목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69,290	391,000	78,290	16.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테크 설치시 잡철물 제작설치를 설치단가로 변경 적용
- 옹벽 설치시 유로품 물량 착오 물량 수정 적용
- 돌붙임 품을 2012년 품으로 변경 적용
- 깬잡석 찰붙임 품을 2012년 품으로 변경 적용

○○동 산○○번지~○○마을(1구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868M, B= 1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267,000	1,157,760	109,240	8.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별개제근 중복계산 면적 산출수량(3,644㎡ → 1,927㎡)수정
- 토공 기준틀 과다 물량 대하여 50%삭감처리
- 가물막이 흙쌓기 공법변경(흙관설치)으로 물량 축소(338㎡ → 4㎡)
- 가설사무실 및 실험실 설치개소 축소(각각2개소 → 각각 1개소)
- L형측구 비닐깔기 물량삭제

○○○ 가는길 보행경관 형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L형측구 : 1627M, 포장 8,292㎡, 수목식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062,660	956,630	106,030	9.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기타 잡비계산(안전관리비 산정) 재산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삭감(300억원 이상 대상사업에 적용)
- 화강석 보도블럭 깔기 석재판 불임을 보도블럭 깔기로 변경 적용
- 관급 자재대 산출수량 오류분분 변경적용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갑문 : 5련(3.0*3.0), L=144M, 호안공 1,429㎡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646,106	1,260,630	385,476	23.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암(발파암)에 대하여 일부 사석기초재료로 재활용하여 자재대 및 운반비를 절약함.
- 시멘트, 쇠석골재, 잡석, 사석, 파형강관 등 자재대를 현장도착도 단가로 적용하여 운반비용을 절약함
- 물푸기 시간을 과다 물량산출에 따른 물량 재산출 적용
- 차수매트 설치 물막이 양면부분을 일면부분으로 면적변경 적용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스콘포장 등 A=25,626㎡, 경계석 등 L=5,324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405,000	1,911,330	493,670	20.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기존맨홀인상 및 인하 77개소에 대한 맨홀뚜껑 교체품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시공부분에 대하여 전 물량 삭감처리
- 보차도 경계석 설치 물량 중복계산 부분 삭감(6920M→3879M)처리
- 기타 운반단가 경비에 대하여 현장 도착단가로 적용하여 운반경비 삭제
- 바닥포장 현장시공단가 4%할증부분 미적용
- 기본 보도블럭 견기 인력품을 기계90% 및 인력 10% 변경적용.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면적 품 변경적용
- 기타 잡비계산(안전관리비 산정) 재산정

○○방조제 개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호안공 피복석쌓기 3,623㎡, 압사석 쌓기 3,892㎡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07,009	1,137,796	169,213	12.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사석의 속고르기 면적을 부직포 설치 전면에서 채움석 범면 면적 적용
- 중비, 피복석, 압사석, 채움석 운반비용(재료비, 노무비)단가를 경비단가로 적용
- 흙관접합 및 부설 인력품 중 수도배관공에서 일반배관공으로 변경 적용
- 구조물 터파기(기계90%, 인력10%)품 기계품으로 100% 변경 적용

○○아파트 단지내 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스팔트 포장 2,311㎡, 인조화강석 포장 1,650㎡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52,267	566,526	85,741	13.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기존 보도블럭 철거 후 포장으로 원지반 다짐 제외 적용
- 화강석 포장 품 2012년 품으로 변경 적용
- 포장깨기 품에서 집토 물량 제외 적용
- 중기 운전 노임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 적용

○○의 강 선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량 2개소 블럭설치 1,237㎡,식생매트 35,582㎡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387,730	7,483,584	904,146	10.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식생매트 설치시 고르기품 이중적용으로 제외
- 사토 물량중 호안블럭 철거 물량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제외 적용
- 테크 설치시 잡철물제작 설치품을 잡철물 설치품으로 변경 적용
- 환경보전비와 세륜시설 설치비용 이중적용으로 설치비 제외 적용

○○ 체험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진입데크 및 전망데크 1개소, 전망대 2개소 설치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96,400	443,999	52,401	10.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데크 설치시 잡철물 제작설치를 잡철물설치 단가로 변경 적용
- 데크 설치 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적용
- 성토면 고르기(모래) 품을 보통인부 0.17→ 0.017으로 변경 적용

○○ 생활용수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상수관 부설 L=2.84m, 콘크리트 포장 3.272㎡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27,098	476,555	50,543	9.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KP메커니컬 조인트 접합 품에서 이탈방지 압륜 설치 품 제외 적용
- 모래 함증 량 6% → 4%으로 변경 적용
- 직관 함증 수량 제외 적용
- 아스팔트 절삭후 포장품을 아스팔트 포장품으로 변경 적용

○○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인조화강석 포장 1,650㎡, 조형벽면, 테크설치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52,267	566,526	85,741	13.2%

■ 적용기준 및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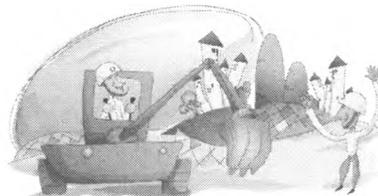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화강석판석 단가 거래실례가격으로 변경 적용
- 아스팔트 깨기 물량을 4.6 → 5.45㎡으로 변경 적용
- 로더 기계 노임에서 중기조장 노임 제외 적용
- 중기노임을 상반기에서 하반기 노임으로 변경 적용
- 기존 보도블럭 철거 후 포장으로 원지반 다짐 제외 적용

2. 건축공사

● ○○○박물관 건립공사	48
● ○○○해변 종합정비사업	49
●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50
● ○○119지역대청사 신축공사	51
● ○○바다역 신축공사	52
● ○○○실내테니스구장 건립공사	53
●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54
● ○○○○농산물가공센터 내부 시설공사	55
● ○○체험관 조성공사	56
● ○○○○마을회관 건립공사	57
● ○○○스케이트장 보수공사	58
● ○○○어린이집 신축공사	59
●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60
● ○○농업인 종합회관 신축공사	61
●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62
●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3
●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64
● ○○○ 임대주택 건설공사	65



○○○박물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2,712㎡(지하1/지상 2층, 1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746,630	4,322,067	424,563	8.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바닥마감/무근 콘크리트+와이어메쉬 부분을 예산절감과 공사효율성을 감안
섬유보강 콘크리트로 대체
- 계단실 벽체 측 핸드레일 불필요한 부분으로 삭제
- 내벽 수성페인트 3회에서 2회로 조정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벽체마감 보강블럭+시멘트몰탈→미장을 생략
하고 치장블럭 쌓기로 조정
- 중앙감시실 액세스후로아 하부 에폭시페인트 불필요하여 삭제

○○○해변 종합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326.60㎡(지상 1층, 1동), 7,803㎡주차장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259,046	2,040,134	218,912	9.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잡철물 제작 설치품에 대하여 작업공정을 감안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트렌치 공사에 강설 고철, 부산물부분을 재료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산정 제외
- 중기산출시 환율 시세 반영 적용
- 강설 고제처리는 직접재료비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1,220㎡(지상 3층, 1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667,327	1,593,174	74,153	4.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피로티 주차장 바닥 시멘트 몰탈+석재타일 부분을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고려 콘크리트 기계미장으로 대체
- 창고, 장비고외 바닥 테코 타일을 일반 비닐타일로 조정
- 2층 사무실, 서고외 벽마감 다채 도료를 수성페인트 2회로 조정
- 외벽 화강석마감부분 중 불필요한 부분 스톤코트 석재뿔칠재로 대체
- 기타공사 중 완제품 공사 이중제경비가 적용되어 부가세만 적용

○○119지역대청사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323.30㎡(지상 2층, 1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17,370	495,823	21,547	4.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내부수평비계를 공사규모 및 효율성을 감안 이동식강관말비계로 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품에 대하여 작업공정을 감안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중기산출시 환율시세 반영 조정
- 강설 고제처리는 직접재료비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바다역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402.31㎡(지하1/ 지상1층, 1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142,603	1,093,906	48,697	4.3%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원가계산 시 해상운반비를 경비항목 중 기계경비에서 운반비로 적용
- 화강석붙임 일위대가 보통인부 공량산정 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품에 대하여 작업공정을 감안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중기산출시 환율시세 반영 조정
- 강설 고제처리는 직접재료비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실내테니스구장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2,916㎡(지하1/지상 2층, 1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602,010	2,513,559	88,451	3.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거푸집 수량 산정 착오로 인한 삭제
 - 가로, 세로 합의 2로 하여야 하나 곱하기로 계산함
- 철골 할증 수량 조정
 - 일괄 7%적용 → 단면규격중 Flange와 Web의 합이 800이하는 소형 5%적용
- 흙속에 매몰되는 부분의 거푸집을 4회에서 6회로 조정
- 컨테이너 가설사무소를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건물내부 사용
- 내부수평비계를 공사규모 및 효율성을 감안 이동식 강관말비계로 조정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1,588㎡(지상 3층, 1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510,577	2,417,251	93,326	3.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테라조타일 마감재 금액 조정
 - 도면에는 일반타일이나, 내역은 광택처리한 타일사용
- 조합페인트 칠재면 붓칠을 3회에서 2회로 조정
- 컨테이너 가설사무소를 12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건물내부 사용
- 중기산출시 환율시세 반영 조정
- 강설 고제처리는 직접재료비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농산물가공센터 내부 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3,240㎡(지상 2층, 1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80,000	367,881	12,119	3.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의 요율 조정 :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일위대가(준공청소) 삭제하고 현장정리로 갈음
- 재료 할증률 조정 : 시트, 타일 등 품셈기준 적용
- 일위대가표의 인부요율 품셈기준 적용

○○체험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시시설, 설명패널, 모형전시물, 전시용 장비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27,541	745,127	82,414	9.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견적서에 포함된 부가세 및 제경비 원가계산서에 이중적용 제외
- 내부수평비계를 공사규모 및 효율성을 감안 이동식 강관말비계로 조정
- 일위대가(준공청소) 삭제하고 현장정리로 같음
- 일위대가표의 인부요율 품셈기준 적용

○○○○마을회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411.76㎡(지상2층, 1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35,790	616,431	19,359	3.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화장실 시멘트 액체방수 높이 1.2M에서 0.6M로 조정
- 창고바닥 마감재는 데코타일에서 비닐타일로 조정
- 현장설치도인 강화유리문의 노무비 삭감
- 잡철물 제작 설치품에 대하여 작업공정을 감안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복층유리 끼우기에 코킹재 시공품 포함되므로 코킹 노무비 삭감
- 강설 고제처리는 직접재료비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스케이트장 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1,092.83㎡(지하1/지상 2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205,003	1,181,122	23,881	2.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기초부분 합판거푸집 3회를 유로폼으로 변경
- 통행복도나 홀의 천정마감을 경량철골천정틀+석고보드+암면텍스12mm에서 경량철골천정틀+아미텍스6mm로 변경
- 안전웬스 수량에서 지하출입구 부분에는 설치 제외하므로 물량 조정
- 소변기 철거, 대변기 철거, 수전철거(특별플랜트인부 0.12인 및 보통인부 0.01인) 등을 세면기 철거품(특별플랜트인부 0.035인 및 보통인부 0.013인) 준용

○○○어린이집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873.23㎡(지하1층, 지상 2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598,531	1,564,310	34,221	2.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가설사무소, 창고 11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고 건물내부 사용
- 자전거보관대, 신발장 등을 제작에서 조달장터의 유사한 규모로 구입하여 부가세만 적용
- 관목류 식재밀도를 검토하여 조팝나무 91주에서 38주로, 화살나무 310주에서 233주로 조정
- 강철 고제처리는 직접재료비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407.49㎡(지상 2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69,130	652,740	16,390	2.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가구공사 견적에 포함된 운반비를 경비로 적용
- 화장실 거울, 장애인용 대소변기 등 건축과 기계에 중복되어 조정
- 내부말비계를 이동식 강관말비계(100㎡/1대)로 조정
- 중기산출시 환율시세 반영 조정

○○농업인 종합회관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2,135㎡(지상 2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469,576	1,429,936	39,640	2.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콘테이너 가설창고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하고 건물내부 사용
- 잡철물 제작 설치품에 대하여 작업공정을 감안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중기산출시 환율시세 반영 조정
- 강설 고제처리는 직접재료비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616.95㎡(지하3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86,208	771,270	14,938	1.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수장공사에 포함한 가구를 물품구입으로 부가세만 적용
- 잡철물 제작 설치품에 대하여 작업공정을 감안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중기산출시 환율시세 반영 조정
- 강설 고제처리는 직접재료비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662.61㎡(지상2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70,170	554,309	15,861	2.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일반유물 수장대, 대형유물 수장대, 유물정리대 등 견적자재에 포함된 부가세 및 제경비, 원가계산서 이중적용 제외
- 공사 현장여건 및 공사비 절감을 감안 내부수평비계를 이동식 강관비계로 설치면적 100㎡ 1대로 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품에 대하여 작업공정을 감안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견적품 잡재료 인력품의 3%로 조정
- 시멘트운반비 구역화물 상하차비로 계상 조정

○○○○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589m²(지상4층)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49,297	339,065	10,862	3.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 관급자재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의 1.2배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적용
- 콘테이너 가설사무소·가설창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경비로 적용
- 중기단가산출시 되메우고 다지기 중복 산정되어 삭제
- 철골, 철근, 시멘트 운반비 거리 20km에서 현장 위치감안 10km로 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품에 대하여 작업공정을 감안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견적품 잡재료 인력품의 3%로 조정

○○○ 임대주택 건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5,033.77(지하1/지상4층 2개동)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486,599	6,467,270	1,018,879	13.61%

■ 적용기준 및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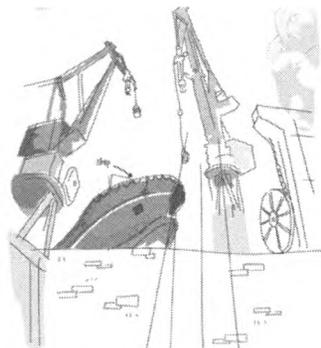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바닥공사 무근 콘크리트+와이어메쉬 부분을 섬유보강 콘크리트로 대체
- 단위세대 욕실 벽체 액체방수 높이 1.2m에서 0.9m로 하향 조정
- 지하층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을 오픈트랜치로 대체
- 주차장 천장 흡음뽀칠 여건 감안 삭제
- 계단실 벽체 무늬코트에서 수성페인트로 조정
-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불필요한 벽, 천장 마감을 콘리트리면처리로 조정

3. 기계설비공사

- ○○해변 종합정비사업 68
- ○○바다역 신축공사 69
- ○○자연사박물관 건립 소방공사 70
-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71
- ○○음식물처리시설 개선공사 72
- ○○중수도 기계설비 설치공사 73
- ○○실내 테니스구장 건립공사 74
- ○○마을회관(공중화장실포함) 건립공사 75
- ○○대피호 건립공사 76
- ○○캠퍼스 지열설비공사 77
- ○○문화재단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78
-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79
- ○○농업인 종합회관 신축공사 80



○○해변 종합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중화장실, 샤워실 등의 장비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 배관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157,517	135,729	21,788	13.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해변의 샤워장 특성상 탈의실의 경우 여름철에 한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바 탈의실의 바닥 전기온돌공사는 제외
- 해변의 특성상 여름철 이외에는 샤워장이나 화장실 세면대에서의 온수 사용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용량은 지하의 전기온수기로 충족하므로 옥상의 태양열온수기 설치의 공사비 대비 그 쓰임새가 높지 않으므로 태양열온수기설치 제외(그 외 일부 부품 조달청단가 조정)
- 천정복사 판넬 등 현장설치도 단가는 자재비가 아닌 경비로 산정

○○바다역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비설치, 위생기구, 옥외 및 옥내 가스배관, 오배수배관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4,143	42,229	1,914	4.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고가수조(물탱크) 조사가격(지역업체 견적)으로 조정
- 배수펌프 동일 용량의 경제적인 모델로 변경
- 천정복사 판넬 등 자재 조달청 가격정보단가로 적용

■ 기타 착안사항

- 공사현장이 섬을 감안하여 동파, 부식에 대한 대책 확인

○○자연사박물관 건립 소방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소화장비설치 및 배관공사,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소화가스설비 및 배관공사, 자탐 및 유도등 설치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06,140	482,617	23,523	4.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별도 계상된 소화설비 주펌프 및 예비펌프의 방진장치는 그 장비가격에 방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 피트실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설치를 스프링클러로 대체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스프링클러 설치시 수손피해 예상되는 전기 통신 분전반, 변전실, 발전기실 등에 설치
- 고휘도 유도등, 시각 경보기 등 자재단가 조달청 가격정보단가로 적용

■ 기타 착안사항

-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기기 설치시 용도적합여부 확인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아케이드(비가림시설)보수-자동개폐기교체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63,679	54,000	9,679	15.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자동개폐기교체(모터, 감속기, 체인 등) 1식 공사는 견적단가를 적용하였는바, 견적가에는 제작, 설치, 시운전이 포함된 단가이므로 이운,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경비, 일반관리비, 이운 등 중복부분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만 적용

■ 기타 착안사항

- “1식”에 대한 견적은 상세내역 확인하고 현장설치도 가격의 특성고려

○○음식물처리시설 개선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탱크류,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및 스팀공급헤더 공사1식, 배관설치 및 기존설비이설, 철거공사, 환기설비공사1식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26,382	724,379	102,003	12.3%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T.A.B공사는 기계설비 공사 완료후 공기조화기, 송풍기, 에어컨 등 공기 분배계통과 물 분배계통에 대한 시험, 조정, 균형 등을 맞추는 공사로서 본 공사 기계설비는 T.A.B를 적용할 대상 장비가 없으므로 삭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에서 관급자재(응축수저장조, 용주저장탱크, 크레인 등)는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닌 납품업체가 직접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공사이므로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제외
- 파이프보온재, 이음쇠(티, 리듀서 등) 밸브 등의 단가 조달청 단가적용
- 현장여건 감안하여 컨테이너 가설사무실, 창고 등 삭제

○○중수도 기계설비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중수설비배관, 원수유입 및 중수사용처 배관, 탱크류설치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6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79,600	458,040	21,560	4.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철물류(탱크류)설치 및 기초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 아닌 납품업체 단가로서 현장설치도 단가이므로 원가계산에서 제외함
- 배관공(수도)을 배관공으로 적용하는 등 일위대가 조정
- 스테인레스 파이프, 이음쇠, 플랜지 등의 단가를 조달청 단가로 적용
- 과다 설계된 파이프 길이, 이음쇠 개수 등을 도면과 일치토록 조정

○○실내 테니스구장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냉난방 배관, 위생배관, 옥외가스배관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8,246	74,380	3,866	4.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비율조정(주 공종인 건축공종과 일치)
- 지하저수조(FRP)의 필요용량이 32톤으로 40톤이면 충분하나 45톤으로 과다설계 되었으므로 40톤으로 규격조정
- 모재부설의 노무비 조정 등 일위대가 조정
- 아세틸렌 등 조달청 단가로 조정

■ 기타 착안사항

- 장비의 용량 확인

○○마을회관(공중화장실포함)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비설치, 난방 배관, 위생배관, 옥외가스배관, 가스배관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91,900	87,180	4,720	5.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휴지걸이 위치를 대변기 칸막이 안으로 변경, 유아용거치대 위치가 유아용 변기 칸막이 안에 있어서 어른 대변기 칸막이 안으로 조정
- 고철은 낮은 단가가 아닌 높은 단가로 조정 및 유아용 거치대, 기저귀 교환대 등 자재단가 조정
- 천정복사 판넬 수량 조정 및 단가조정, 현장설치도로서 원가계산방식이 아닌 관급으로 발주
- 공기조절장치 설치용 크레인 사용시 건물이 2층이어서 25톤으로도 충분 하나 50톤으로 설계되어 25톤으로 조정

○○대피호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비설치공사, 환기덕트공사, 위생배관 및 냉난방기설치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66,410	51,416	14,994	22.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실외기 설치시 필요한 크레인이 50톤 2대로 설계되어 있어 주변상황 등을 검토한바, 대피호는 지하구조물로서 지상 바닥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크레인 25톤 1대로 변경(예산절감)
- 냉난방기 중앙컨트롤은 여러층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내기를 실별로 컨트롤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이나 대피호는 지하에 한곳에만 설치하므로 중앙컨트롤이 필요치 않아 삭제토록 함
- 전열교환기설치공사는 설치 1식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덕트, 디퓨저, 보온 등을 제외하고 추가사항만 내역에 반영토록 수정하였음.

■ 기타 착안사항

- 냉난방기 설치 공사시 기본수량 제공 등 조달청 시방 적용 필요

○○캠퍼스 지열설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비설치공사, 기계실배관공사, 옥외지열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천공 및 그라우팅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29,003	306,655	22,348	6.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천공 및 그라우팅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설계단가가 견적서에 의한 단가로서 현장설치 완료공사로 볼 수 있어 설계 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등을 제외시켜 제경비제외공사로 별도 적용함.(경비절감)
- 관보온재(고무발포) 등 자재를 조달청 가격정보단가로 적용

■ 기타 착안사항

- 견적처리 설치공사는 대부분 현장완료 공사로서 제경비 제외공사로 구분

○○문화재단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비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오배수배관공사, EHP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56,710	50,476	6,234	10.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냉난방기 EHP는 조달청 제3단가에 등록된 장비로서 조달에 등록된 배관 규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달청 시방서에 따라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배관 규격을 적용함이 타당함(배관물량조정)

▶ 기타 착안사항

- 조달청 시방에 따라 액관+가스관의 평균규격을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함

예) 길이 7m 액관15.88+가스관28.58=44.46/2=22.23→25, 7m×2=14m
(옵션에 등록된 배관구경 적용)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비설치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냉난방설치공사, 소화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0,239	72,165	8,074	10.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한 천장형 복사난방시스템은 전력소모가 비교적 높고, 공사비가 전기방열기 보다 많아 전력소모가 적고 공사비가 저렴한 전기방열기 시스템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 스파이럴덕트 등 자재를 조달청 가격정보단가로 적용

■ 기타 착안사항

- 화장실 동파는 화장실사용이 없는 밤에 동파되기 쉬우므로 전기료가 저렴하고 공사비가 적은 방열기 시스템을 권장함

○○농업인 종합회관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비설치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냉난방설치(EHP)공사, 환기덕트설치공사, 자동제어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61,001	157,694	3,307	2.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및 기계설비공사일위대가표(설비건설협회)

■ 심사내용

- 전열교환기(공기순환기)는 조달청 제3단가에 등록된 장비로서 조달청 시방에 따라 설치비 1식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닥트, 디퓨저 등을 제외한 추가물량만 적용함이 타당함(보조자재물량조정)
- 용접봉, 아세틸렌 등 자재를 조달청 가격정보단가로 적용

■ 기타 착안사항

- 조달청 시방에 따라 급·배기풍량 기준으로 스파이럴닥트, 플렉시블덕트, 디퓨저, 엘보, 분기관 기본수량 등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설치비에포함)

4.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사업(전기)	82
● ○○ ~ ○○ 도로개설 신호등 설치공사	83
● ○○박물관 건립사업(전기)	84
● ○○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85
● ○○복지관 건립공사(전기)	86
● ○○청사 별관 증축공사(전기)	87
● ○○ 임대주택 전기공사	88
● ○○ 공원 전기공사	89
● ○○ 도로 전기공사(설계변경)	90
● ○○ 시범사업 전기공사(설계변경)	91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사업(전기)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로등 교체 1식, 제어함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97,318	469,279	28,039	5.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광케이블통신관 설치 공량 및 수량 조정(2열 → 1열)
 - 광케이블통신관(COD3공)에 2공의 SPARE가 있으므로 예비 1열 삭제
- 전선관 및 케이블 수량 조정
 - 수량산출서와 도면 수량이 상이하여 도면 수량으로 조정
- 가로등기구 설치 공량 조정
 - 가로등기구 2등용 설치 공량을 1등용 설치 공량의 180% 적용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 ~ ○○ 도로개설 신호등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통신호등 설치 1식, 제어함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2. 6월 ~ 2014. 3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391,646	371,131	20,515	5.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중복적용 공종 제외
 - 관로굴착 및 복구 공종에 배관보호용 매설시트 설치 공종이 중복 적용
- 전선관 및 케이블 잡재료비 제외
 - 옥외 공종이므로 소모 잡재료비 삭제(전기품셈 1-24)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박물관 건립사업(전기)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변전설비, 전등·전열설비, 동력설비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62,721	733,480	29,241	3.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조명기구 TYPE 조정 : 레이스웨이 LED 35W → 갓등 FL-32W/2
- 수전 케이블 3열 동시 포설 적용
- 옥외 외등 설치 공량 조정(인력 → 기계)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로등 교체 1식, 제어함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2. 3월 ~ 7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04,750	390,226	14,524	3.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간접노무비 제비율 조정 : 11.5% → 10.6%
- 중기단가 조정 : 굴삭기(타이어) → 굴삭기(무한궤도)
- 제어함 기초 터파기 물량 조정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복지관 건립공사(전기)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변전설비, 전등·전열설비, 동력설비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54,647	343,260	11,387	3.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조정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2.48* → 【(재료비+직노)*2.48%】 *1.2
- 태양광발전설비 원가계산 계상 조정
 - 재료비 → 제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자재비(현장설치도)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청사 별관 증축공사(전기)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변전설비, 전등·전열설비, 동력설비 1식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2. 12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60,694	450,757	9,937	2.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옥외 외등 노무비 조정
 - 인력 설치 → 기계 설치
- 공통 공종 단가를 더 낮은 토목 공종 단가로 조정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 임대주택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변전설비, 전등·전열설비, 동력설비 1식
- 사업기간 : 2012. 9월 ~ 2013. 6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58,027	930,538	27,489	2.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조정
 - 적용대상 관급자재비에서 조달수수료 제외
- 전기품셈에 의한 공량 조정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 공원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원등, 제어반, 양방향 점멸기 설치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642,682	1,579,273	63,409	3.9%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발주자용 감독사무실 조정
 - 기존 사업구간 감독사무실 활용
- 관급자재 중 중복 자재 수량 조정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 도로 전기공사(설계변경)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통신호기, 가로등, 터널등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1. 12월 ~ 2013. 6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36,773	404,132	32,641	7.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철주앙카 설치 공종 조정
 - 철주기초보호(방청 및 볼트캡) 재료비만 반영하고 노무비 삭제
- 내역서 엑셀 서식 오류 조정
- 최저 거래실례가격 적용(조달청 가격정보 등)

○○ 시범사업 전기공사(설계변경)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통신호기, 가로등, 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0. 9월 ~ 2013. 2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023,504	1,792,378	231,126	11.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2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 심사내용

- 신규품목(주차관제설비) 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로 조정

5. 기술용역

- 유입하수 균등부하조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토목분야) ... 94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토목분야) 95
- ○○산업단지 고가차도건설 전면책임감리용역(토목분야) ... 96
- ○○○○공구 실시설계 수립용역(토목분야) 97
- ○○정수사업소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토목분야) ... 98
- ○○○ 시설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분야) 99
- ○○○○~○○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100



유입하수 균등부하조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형현황측량 12,000㎡, 지질조사 4공, V = 20,000㎥
- 사업기간 : 2012. 6월 ~ 12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29,702	225,828	3,874	1.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심사내용

- 토질조사관련 기계운반 부분 조정
 - 시추기계기구 운반 4회 → 1회 반영
 - 기술료(노무+제경비) 20% → 기술료에 중복반영으로 삭제
- 굴착 자재단가 조정(조달청 중기기초단가)

■ 기타 착안사항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미반영 분 반영요구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인천광역시 수도기본계획 변경 수립 1식
- 사업기간 : 2012. 5월 ~ 2013. 12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980,000	2,975,632	4,368	0.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 심사내용

- 수산정수장 시설물개량계획의 취수시설 적용 10% → 0%

○○산업단지 고가차도건설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남동산단 고차다도 : L=800M, 선학경기장 진입로 : L=236M
강화경기장 진입로 : L=1,270M
- 사업기간 : 2012. 6월 ~ 2014. 3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732,000	2,501,670	230,330	8.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심사내용

- 제경비 부분 조정 : 직접인건비의 115% → 110% 적용
- 기술료 적용 :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의 30% → 20% 적용
- 휘발유, 경유 단가 조정(조달청 중기 기초단가)

○○○○공구 실시설계 수립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개발계획(변경)수립 1식, ○○○○공구 실시계획수립 1식
- 사업기간 : 2012. 6월 ~ 2014. 6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7,145,000	7,138,946	6,054	0.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심사내용

- 개략설계 직선보간법 수량산출 적용요율 재산정
 - 금액적용부분의 오타 수정

■ 기타 착안사항

- 손해배상공제보험료의 부가세 미포함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발주

○○정수사업소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일 처리용량 542,000㎥, 건축물 연면적 15,286㎡
- 사업기간 : 2012. 6월 ~ 2013. 1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31,000	229,800	1,200	0.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심사내용

- 제경비 부분 조정 : 숙박비 50명 → 출장여비 10명 적용
- 휘발유, 경유 단가 조정(조달청 중기 기초단가)

○○○ 시설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시설 2,315㎡ 이전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50,000	431,000	19,000	4.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심사내용

-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예상 공사비를 각각 계산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부분과 건설공사부분으로 나누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 도서작성의 구분이 “상급” 이고, 시설이전이므로 기획업무 대가 삭제

○○○○~○○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해상교량 : L=1.39Km(B=11.0m, 방호벽 제외)
 - 토 공 부 : L=0.15Km, B=11.0m
 - 전기공사 1식, 부대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730,300	1,618,400	111,900	6.5%

■ 적용기준 및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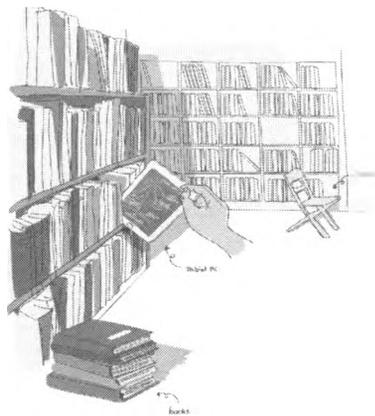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적용

■ 심사내용

- 기술료 적용단가를 최저단가를 적용(30%→ 20%)하여 산출
- 경유단가를 계약심사 의뢰 시점 단가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산출금액 오류부분에 대하여 금액 재산정

6. 일반 · 학술용역

●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102
●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03
●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04
● ○○연근해 침적폐어망 수거사업	105
● 음식물폐수 운반용역	106
● ○○○공원 해수로 준설용역	107
● 긴급기동반 운영 위탁용역	108
● ○○○기반 ○○○서비스 공통 플랫폼 표준규격 개발 ...	109
● ○○○○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110
● ○○근린공원 국공장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	111
●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112
● ○○○○ 종합관리(시설, 미화, 경비)	113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역(○○개소), 2지역(○○개소)
 - 용역내용 :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시설물점검 및 보수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45,347	233,462	11,885	4.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년 기준 각종보험 요율

■ 심사내용

- 직접노무비 단가오류 및 상여금 수정
 - 유지관리 노무비 단가 오류수정 : 80,206원 → 80,203원
 - 유지관리 월 상여금 산식 수정
 - 노무비 조정에 따른 보험료 조정사항 반영
- 중식비 단가조정 : 6,000원 → 5,000원
- 경상수선비 제외 : ○지역(2,136,322원) ○지역(2,147,986원)
- ○지역 도서출장비 조정 : 2,970,000원 → 2,948,400원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 조정사항 반영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연안어장(사업면적 33,500ha/70톤)
- 사업기간 : 2012. 7 ~ 9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44,975	207,439	37,536	15.3%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산출근거 1호표 작업선 1회 작업소요시간 29분 → 25분
- 산출근거 3호표 예선(대기)시 인건비만 계상
- 폐기물 처리비 조정 : 180,000원 → 150,000원
- 환율 및 유류 적용기준 조정
 - 환율 : 1,138.00원 → 1135.55원(2012. 4월 평균환율)
 - 경유 : 1,867.60원 → 1,677.50원(2012. 5월 3주)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조정사항 반영

■ 기타 착안사항

- 유사 쓰레기 수거사업 거래실례 기준 참조
- 한국석유공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참조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쓰레기 수거·처리(306톤)
- 사업기간 : 2012. 6 ~ 1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59,662	402,748	56,914	12.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계산식 오류 정정 : 일위대가(6호표 쓰레기 해상운반)
- 환율 조정(서울외국환중개 2012. 5월 1주 평균)
- 휘발유 및 경유 조정(한국석유공사 2012. 5월 1주)
- 선원 노임단가 정정 : 96,955원 → 83,617원(△13,338원)
- 쓰레기 위탁처리비(소각) 조정 : 172,000원 → 150,000원
- 쓰레기 위탁처리비(재활용) 조정 : 92,000원 → 80,000원
- 기타경비 제외 : 11,607,030원 → 0원(△11,607,030원)
-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 6% → 5%
- 이윤, 부가가치세 등 조정사항 반영

■ 기타 착안사항

- 한국석유공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참조

○○ 연근해 침적폐어망 수거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침적쓰레기 인양 및 해상운반, 육상하역, 처리(50톤)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18,329	98,650	19,679	16.6%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산출근거 1호표 작업선 1회 작업소요시간 32분 → 25분
- 산출근거 3호표 특별인부 → 일반인부로 조정
- 산출근거 3호표 예선(대기)시 인건비만 계상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조정사항 반영

■ 기타 착안사항

- 유사 침적폐어망 거래실례 기준 참조
- 한국석유공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참조

음식물폐수 운반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음식물폐수 운반(15,300톤/년)
- 사업기간 : 착수일 ~ 2012. 12. 31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65,102	147,936	17,166	10.3%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건설공사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톤당 단가 조정 : 10,791원 → 9,669원
- 재료비
 - 적재시간(t1) 제외산정 ※ 건설공사 표준품셈 10-1-3 적용
 - 경유단가조정 : 1625.02원→1517.11원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적용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 재료비 조정사항 반영

■ 기타 착안사항

- t1, t3, t4 적용값은 실제 소요시간임

○○○공원 해수로 준설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원 해수로내 가시파래 및 침전물 제거
 - 작업면적 : 69,690㎡(해수로 63,390㎡, 담수조 6,300㎡)
- 사업기간 : 2012. 4 ~ 10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89,277	169,301	19,976	10.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2012건설공사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내용

- 재료비 : 제1호표
 - 경유 단가 : 1559.71원 → 1654.53원(한국석유공사 인천지역 적용)
 - 경유 소요량 : 50.11 → 35.071(실제 소요량 감안 조정)
- 노무비 : 제1호표
 - 작업시간 : 7시간 → 8시간(작업준비시간 및 정리시간 반영)
 - 준설선 운전사 : 2012년도 노임단가 적용
- 노무비 : 제2호표
 - 노임단가(보통인부) : 공사부문 → 제조부문
-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조정사항 반영

긴급기동반 운영 위탁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리 9,198세대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28,808	117,585	11,223	8.7%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기본급 조정 : 2,256,606원 → 1,891,000원(△365,606원)
 - '12년도 건축물 유지관리용역비 원가계산기준의 분야별 책임자 기본급
 - 기본급 조정에 의한 퇴직적립금 및 간접인건비 조정, 상여금 100%
- 사업소세 : 437,640원 → 0원(△437,640원)
 - 사업소세 대상이 아님
- 장애인고용분담금 : 663,840원 → 0원(△663,840원)
 - 100명 이하의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 제외

○○○기반 ○○○서비스 공통 플랫폼 표준규격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반 통합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공공방송 서비스 개발
- 사업기간 : 2012. 7월 ~ 12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00,160	77,048	23,112	23.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1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5, '12.1.2)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3676호, '12. 3. 26]

■ 심사내용

- 인건비 : 책임연구원(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2인→1인)
- 재료비 : 유인물비(표지와 내지 단가 조정하여 555천원 → 400천원)
- 경 비
 - 국외여비 : 국외여비지급 기준에 의거 일비 60천원 → 59천원
 - 회 의 비 :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자문회의비 300천원 → 100천원
- 부가가치세 : 산출시 여비 및 교통 통신비 제외

○○○○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기후변화 현황분석 및 예측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00,000	172,091	27,909	14.0%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12.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3676호, ‘12. 3. 26)

■ 심사내용

- 경 비 : 당초 83,809,038원 → 변경 59,404,470원(△24,404,568원)
 - 책임연구원 출장 횟수 조정 : 5일 → 3일
 - 중간 및 최종보고서 : 경인쇄 기준요금적용
 - 복 사 비 : 흑백(40원 → 20원) 칼라(300원→90원)
 - 복사용지(10box기준) : 월 2회 → 월 1회
 - 프린터토너 : 200,000원 → 75,000원(조달청 3자단가 참조)
 - 공CD : 30,000원 → 15,000원(조달청 3자단가 참조)
 - 시내교통비 : 책임연구원 제외, 연구원 4회→1회, 연구보조원 4회→3회
 - 통신비(전화, 우편, 팩스사용료) : 6,000,000원 → 2,100,000원
 - 설문조사비 : 8,000,000원 → 3,000,000원
- 일반관리비 : 당초 6,929,968원 → 변경 5,962,937원(△967,031원)
- 부가가치세 : 당초 18,181,875원 → 변경 15,644,715원(△2,537,160원)

○○근린공원 국공장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동 산○○ -○번지(면적 1,755㎡)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97,560	174,969	22,591	11.4%

■ 적용기준 및 법규

- ‘12.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5, ’12.1.2)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문화재청)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3676호, ‘12. 3. 26)

■ 심사내용

- 여비 :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운임비 제외
- 현장운영비 : 현장인부임 하반기 단가적용 수정
- 퇴직적립금 제외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년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영
- 연료비 및 수선비 : 900,000원 → 400,000원
- 주재비율 : 50% → 40%(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7조)
- 정리 및 보고서작성
 - 작업 등을 고려 특수인부를 보통인부로 조정
 -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제외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적용(1년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영)
 - 보고서 간행비 : 10,000,000원 → 3,500,000천원
 - 학술료 요율 : 30% → 20%(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7조)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868㎡)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6,339	78,152	8,187	9.5%

■ 적용기준 및 법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문화재청)
- ‘1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5, ’ 12.1.2)
- ‘12.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대한건설협회, 제 36504호)

■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 19,655천원 → 19,161천원
 - 정리·보고서 작성기간 : 56일 → 53일
- 직접경비 : 31,318천원 → 29,659천원
 - 여비 : 조사단장 일비 30천원 → 20천원
 - 현장운영비
 - 현장인부임 기본급 보통인부 노임 75,608원 → 80,732천원
 - 현장인부임 기본급 조정에 따른 주휴수당 변동
 - 굴삭기(0.6㎡) 임차료 기계화시공 단가 적용
 - 조사재료비 : 조사용품 14종 품목의 단가 조정
 - 위탁비: 현황측량 학술료 요율 40% → 20%
 - 유물정리비 : 정리용품 1종 품목의 단가 조정
- 제경비(100% → 80%) : 19,655천원 → 15,328천원

○○○○ 종합관리(시설, 미화, 경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인력 6명, 시설(건축·기계·전기)·미화·경비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3. 1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00,207	267,430	32,777	10.9%

■ 적용기준 및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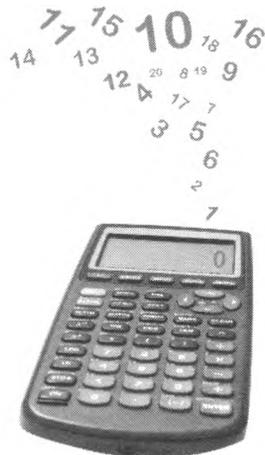
- '12. 중소기업직종별 임금 조사(중소기업중앙회)
- '12. 건축물 유지관리용역비 원가계산 기준(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 '12. 건물 위생관리(청소)용역 표준도급비(한국건축위생관리협회)
- 행정안전부 회계통첩[재정관리과-4133('11. 12. 9)호]

■ 심사내용

- 시설관리(소장) 기본급 조정 : 2,286천원 → 2,162천원
 - 기본급 조정에 따른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변동
- 시설관리(기사) 기본급 조정 : 3,947천원 → 3,782천원
 - 자격수당 제외, 기본급 조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변동
- 미화원 기본급 조정 : 1,015천원 → 1,147천원
 - 인원 조정 : 2명 → 1명
 - 기본급 조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변동
- 경비원 기본급 조정 : 2,396천원 → 2,708천원
 - 기본급 조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변동
- ※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 회계통첩에 의거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낙찰률 가산
- 보험요율 조정 : 건강 2.82% → 2.9%, 산재 2.1% → 2%, 고용 0.7% → 0.8%

7. 물품(제조·구매·인쇄물)

- ○○ 관제시스템 구성품 추가구입 116
- 광대역통합망 및 ○○○○ 통합관제센터 구축 117
- ○○○설치 지형축소 모형(디자인) 제작설치 118
- ○○○ CCTV카메라 구매 설치 119
- ○○지구 버스승강장 제작설치 120
- 2012. ○○홍보 책자 제작 121
- 2012. ○○○○종합홍보물 제작 122
- 2012. ○○○○ 홍보물 제작 123
- ○○○ 지형 축소모형 제작설치 124



○○ 관제시스템 구성품 추가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관제시스템 구성품 추가구입
- 사업기간 : 2012년 1 ~ 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48,715	153,120	4,406	5.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구입단가(업체견적) 조정
 - MDT콜 네비게이션 : 당초 780,000원 → 변경 770,000원
 - 후방카메라 : 당초 80,000원 → 변경 70,000원
 - 통합형디지털미터기 : 당초 650,000원 → 변경 630,000원
- 설치비 단가(업체견적) 조정
 - 콜단말기 설치 : 당초 150,000원 → 135,000원

■ 기타 착안사항

- 2011년도 ○○관제시스템 구입단가 및 조달청 단가계약 현황 확인

광대역통합망 및 ○○○○ 통합관제센터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임대형 광대역통합망 구축, ○○○○통합관제센터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887,144	1,807,869	79,275	4.2%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재료비 조정 : 업체견적 및 시장조사
 - 관제센터 H/W, 관제센터 S/W, 음향시스템, 어린이체험학습관 물품 등
- 인테리어 일위대가 수정
 - 3, 4호표 : 현장정리, 준공청소 → 보통인부 수량 수정
 - 15호표 : ALL PUTTY → 퍼티, 연마지, 도장공 수량 수정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조정내역 반영

■ 기타 착안사항

- 재료비는 전문업체의 견적 등을 통한 적정단가 적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기·정보 통신품셈, 물가정보지 등 적용

○○○설치 지형축소 모형(디자인) 제작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실물모형 제작 1EA, 안내키오스크 1EA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4,170	48,468	5,702	10.5%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재료비 : 우레탄신너 등 4종 단가 조정
- 일위대가 제11호표 : 바탕만들기 노무비 제외
- 제조 노임단가 오류 수정 : 특별인부 외 6
- 설치 노임단가 오류 수정 : 작업반장 외 13
- 간접노무비 제외
- 경비 : 복리후생비 등 8종 일반관리비로 같음
 - 감가상각비 일위대가 산정 시 공구손료와 중복
 - 지급임차료 및 수리비 등 본 사업과 무관

■ 기타 착안사항

- 물가자료 및 가격정보 등 거래실례가격 참작

○○○ CCTV카메라 구매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린이집 외 2개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5,970	51,980	3,990	7.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노무비 조정 : 1,473,073원 → 1,333,098원(△139,975원)
- 일반관리비 제외 : 2,843,754원 → 0원(△2,843,754원)
- 이윤 제외 : 647,524원 → 0원(△647,524원)

■ 기타 착안사항

-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하는 원가계산을 적용하나,
- 방법용 CCTV 카메라는 기성품으로 원가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으로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삭감하여 심사

○○지구 버스승강장 제작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구 버스 승강장 2종(장변형 1식, 기본형 4식)
- 사업기간 : 2012. 6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9,992	92,148	7,844	7.8%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노무비 및 재료비 : 일부 공종별 수량 조정
- 간접노무비 효율 10%, 이윤 효율 25% 이내로 조정

■ 기타 착안사항

- '12.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대한건설협회, 제36504호)
- '12. 중소기업직종별 임금조사(중소기업중앙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국토해양부령 제450호)
- 기 계약심사 결과, 조달청 단가, 최근 조달청 입찰결과 참조

2012. ○○홍보 책자 제작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행복한 인천 외 2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89,870	83,239	6,631	7.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기획료 조정
 - 면 수 : 120면 → 116면(△4면)
 - 단 가 : 90,000원 → 70,000원(△20,000원)
- 사진컷 조정 : 200컷 → 116컷(△4컷)
- 접지비 추가 : 0원 → 100원
- 트윈스리링제본 : 800원 → 200원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정
 - 인쇄분야 : 일반관리비(10%), 이윤(20%)
 - 기획편집분야 : 일반관리비(5%), 이윤(10%)

2012. ○○○○종합홍보물 제작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국문·영문·일문·중문 총 4종 14,000부
- 사업기간 : 2012. 7 ~ 9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49,942	45,877	4,065	8.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자체 과업지시서, 기 계약심사 결과 등 거래실례가격 참조

■ 심사내용

- 용 지 대 : 표지 253,776원 → 253,000원, 내지 202,500원 → 168,000원
- 손 지 율 : 국·영·일·중문 각 표지 및 내지 연수에 따라 조정
- 전자조판 : 과업지시서에 의거 국·영·일·중문 각 1부당 44면으로 조정
- 인 쇄 비 : 국·영·일·중문 각 표지 및 내지 통당 4색도 단가 적용
 - 단, 표지(떡박)은 통당 4색도 아닌 1색도 단가 적용
- 기획·편집
 - 교정·교열(1면) : 규정에 의거 단가 20,000원 → 700원
 - 번 역(1면) : 거래실례가격과 과업지시서의 보정페이지 수량 적용
25,000원 * 10면 → 35,000면 * 20면
 - 일반촬영(1컷) : 거래실례가격 참조하여 200,000원 → 110,000원
 - 촬영진행(1식) : 일반관리비로 같음
-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간의 일치

2012. ○○○○ 홍보물 제작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광상품 기획자료 책자 등 3종 7,650부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39,600	37,565	2,035	5.1%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자체 과업지시서, 기 계약심사 결과 등 거래실례가격 참작

■ 심사내용

- 관광상품 기획자료 : 9,071천원 → 9,128천원
 - 기획·디자인 : 조판과 중복으로 제외 / 용지 : 출력용지 연수, 단가 조정
 - 조판·필름·인쇄판 : 공정별 면수, 판수, 단가조정 / 인쇄 : 횡수, 단가조정
 - 제본 : 단가조정 / 기타 : 일반관리비 5%적용
- 관광상품 기획자료 : 20,688천원 → 19,562천원
 - 용지 : 출력용지 연수, 단가조정, 지도제작 과업범위에 없어 제외
 - 조판·필름·인쇄판 : 공정별 면수, 판수, 단가조정 / 인쇄 : 횡수, 단가조정
 - 기타 : 일반관리비 5%적용
- 프레스크리트 폴더 : 6,243천원 → 5,459천원
 - 기획·디자인 : 면수, 단가조정 / 조판·필름·인쇄판 : 수량조정
 - 인쇄 : 횡수 조정 / 가공 : 견적 저가적용

○○○ 지형 축소모형 제작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형축소 실물모형 제작 1식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9,977	43,784	6,193	12.4%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 심사내용

- 지형축소모형 제조 노임단가 적용 : 도장공 및 보통인부 등
- 설치 노임단가 오류 수정 : 보통인부 72,415원 → 80,732원
- 실물모형 제작 : 6회적층 → 8회적층
- 산재, 고용, 건강보험료, 기타경비 제외
- 일반관리비 조정 : 6% → 11%
- 이윤 조정 : 9% → 25%

8. 군·구 주요사례

- ○○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126
- ○○부두 ○○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128
- ○○동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130
- ○○○○방지시설 설치공사 131
- ○○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32
- ○○○공원 경관 개선사업 133
- ○○○○○ 조경 및 쉼터 조성공사 135
- ○○○ 석축 정비공사 136
- ○○○ 다목적 선박 접안시설공사 137
- ○○○ 비법정도로 및 도로확포장공사 139



○○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토 공 : 터파기 1,148㎡, 사토 277㎡
- 관 로 공 : 흙관(D900)-168m, D800-57m
유리섬유관(D900)-14m, D800-17m
- 구조물공 : 맨홀(2호)-8ea
- 포 장 공 : 표층-93㎡, 보조기층-35㎡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377,339	332,712	44,627	11.8%

■ 심사내용

○ 단가산출 심사

- 산근 #1, 2 구조물 헐기 및 깨기 : 기계경비 50%적용, 굴삭기 Cm값 20→18
- 산근 #3 보도블럭 철거 : 플레이트콤팩터, 굴삭기 삭제
- 산근 #6 구조물 터파기 : 인력할증 50% 삭제, 굴삭기 Cm값 20→18
- 산근 #7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할증 50% 삭제, 굴삭기 Cm값 20→18
- 산근 #8 사토운반 : 사토 운반거리 12→10km, 덤프속도 20→35km
- 산근 #9 폐기물상차 : 굴삭기 0.6→0.7 변경
- 산근 #10, 11 배수관 부설 : 크레인→굴삭기 변경
- 산근 #12 배수관 부설(흙관250) : 크레인→굴삭기 변경
- 산근 #26 차선도색(움착식) : 덤프 2대→1대, 밀그림 삭제

- 산근 #31 수목이식 : 굴삭기 0.4→0.7, 부엽토 삭제
- 산근 #32 가설사무실 : 사무실 규격 축소 3.0x12x2.6→ 3.0x6x2.6
- 산근 #33 공사안전관리시설 : 표지판(제작→제품), 웬스연장(60→40)
- 산근 #34 중기운반 : 산근 및 호표 중기 변경에 따른 조정
- 산근 #39, 40 구조물 헐기 및 깨기(야간) : 기계경비 50% 적용, 굴삭기 Cm값 20→18
- 산근 #41 보도블럭 철거(야간) : 주간으로 변경
- 산근 #44 구조물 터파기(야간) : 인력할증 50% 삭제, 굴삭기 Cm값 20→18
- 산근 #44 되메우기 및 다짐(야간) : 인력할증 50% 삭제, 굴삭기 Cm값 20→18
- 산근 #46 사토운반(야간) : 사토 운반거리 12→10km, 덤프속도 20→35km
- 산근 #47 폐기물상차(야간) : 주간 변경
- 산근 #53 보차도 경계석 설치(야간) : 주간 변경
- 산근 #55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야간) : 보도블럭 구간→주간 변경
- 산근 #60 보도블럭 부설(야간) : 주간 변경
- 산근 #61 도로경계석(야간) : 주간 변경
- 산근 #79, 80, 81 SK판넬설치 및 해체 : 기자재 손료중 공용일수 5→3일
- 호표 #2 지수 및 보강공법(450mm) : CCTV카메라 사용시간 1.5→1시간
- 호표 #3 지수 및 보강공법(600mm) : CCTV카메라 사용시간 2→1.33시간
- 호표 #4 지수 및 보강공법(900mm) : CCTV카메라 사용시간 3→2시간
- 호표 #5 관로세척 : 용수비 삭제
- 호표 #10 지장물 보호공 제작 :재료비 손율 30% 적용
- 호표 #12 지장물 보호공 제작(야간) : 재료비 손율 30% 적용

○ 내역서 심사

- 관 로 공
 - 관로용 경고테이프 : 215→214m 수정
 - 하수관내 CCTV 조사 : 215→78m (800mm 이상 삭제)
- 좌측 부분보수 : 하수관내 CCTV 조사 : 250→78m(800mm이상 삭제)
- 토공(야간) : 보도블럭 철거, 아스팔트 포장절단, 폐기물 상차 주간적용
- 구조물공(야간) : 보차도경계석 설치 주간적용
- 포장 복구공(야간) : 보도블럭 부설,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도로 경계석 주간적용
- 우측 부분보수 : 하수관내 CCTV 조사 134→69m(800mm이상 삭제)

○○부두 ○○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토 공 : 흙깎기 1584.0m³ 흙쌓기 740.0m³
- 배수공 : 우수관(D600mm) 397m 도로경계석 380.0m
- 포장공 : 아스콘표층 2,386.0m² 아스콘기층 1045.0m²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43,650	226,710	16,940	6.9%

■ 심사내용

○ 내역서 조정

- 경계석운반(도로 및 보차도 경계석)은 현장 하차도 이므로, 운반비 산정 중복에 따른 운반비 제외
- 보도블럭운반(t=6cm) 및 흙관운반(D600mm, D250mm)은 현장 차상도 이므로, 운반비 산정 중복에 따른 운반비 제외하고 하차비만 반영
- 하수관내 CCTV조사(신설관)는 구청(공공하수관리팀) 전문인력 및 보유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역 제외
- 하수관 수밀시험(D600mm)은 우수관로의 경우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제외
 - ※ 단, 공사 진행중 배수설비 연결구간 발생할 경우 적용

○ 자재단가 조정

- PE사다리(코팅) 조당 7,000원 → 4,500원
- 이형철근(D16mm) M/T당 820,000원 → 805,000원
- 은행나무(H5.0×R15) 주당 552,900원 → 496,000원
- 오각표지판(60×20×60) SET당 113,400원 → 107,700원
- 삼각표지판(D=90cm) EA당 111,900원 → 106,300원
- 휘발유 1 당 1,769원 → 1,757원
- 컨테이너(사무실 3×9) EA당 3,800,000원 → 3,200,000원
- 일반용철못(N75) kg당 1,437원 → 1,000원
- 각재(외송) m³당 389,221원 → 359,280원
- 결속선(#20) kg당 1,980원 → 1,490원

○ 중기사용료 조정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건설기계운전사 → 일반기계운전사
- 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L) : 건설기계운전사 → 일반기계운전사

○ 단가산출근거 조정

- 산근 8 보도블럭 건기 : 소형고압블럭
- 보도블럭 유용의 목적이 아니므로 인력 100% → 기계90%+인력10%

○○동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면적 20,246.2㎡
 - 사업시행계획 작성,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
 -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5,636	83,149	12,487	13.1%

■ 심사내용

- 내역서
 - 공종별(도로, 공원, 노유자시설, 공동화장실 등)로 용역대가를 산출함에 따라 과다 설계된 실시설계 용역비를 분야별(토목, 건축 등)로 용역대가를 변경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재산정
 - 실시설계 용역비(도로+주차장+방음벽 등) 산정을 위한 용역 대가중 도로포장 공사비(60,952천원) 누락에 따라 누락된 용역대가 반영(증액 2,230천원)
- 수량산출근거 조정
 - 지형현황측량에서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1.25 → 1.0 으로 변경 적용
 - 실시설계(토목+소공원) 효율 조정 100% → 90% 로 변경 적용

○○○○방지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방지시설 설치(옥외용) N=105개소
 - 맨홀설치(1.0m× 1.0m) N=105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2. 11. 30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86,370	143,570	42,800	22.9%

■ 심사내용

- 표준품셈 등 적용(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 하수역류차단장치설치
 - 보도블럭 구간 : 블럭건기 물량 8㎡ ⇒ 4㎡ 수정
 - con'c 포장구간 : 포장 물량 1.68㎡(면적단위) ⇒ 0.74㎡(부피 단위)
 -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 되메우기 30% ⇒ 10% 재검토
 - 각형맨홀
 - 물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전체 물량 상이 ⇒ 물량산출근거 수정
 - 레미콘타설(철근) : 1.832㎡(면적단위) ⇒ 1.68㎡(부피 단위)
 - 거푸집(4회) 수량 16.52㎡ ⇒ 12.77㎡(수량산출과 상이)
 - PE코팅사다리 삭제
 - 현장타설맨홀 ⇒ 기성맨홀 시공 : 물량 전체 50% 적용 재검토
- 표층아스콘포설 및 다짐 : 포장공(1.15인 ⇒ 1인) 보통인부(2.3인 ⇒ 2인)
- 콘크리트포설 : 포장공(3.35인 ⇒ 3인) 보통인부(2.59인 ⇒ 3인)
- 보도블럭포장 : 보통인부 임금 오류수정 97,283원 ⇒ 75,608원

○○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토 공 : 흙각기 386㎡, 흙쌓기 149㎡,
- 포장공 : 잔디블럭 1,061㎡
- 배수공 : U형 측구 107m, 맨홀 1개소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38,480	115,790	22,690	16.4%

■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제비율 조정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 제외
- 표준품셈 등 적용(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 포장공 : 잔디블럭
 - 잔디블럭 시공 수량산출 오류 수정 : 1,061㎡ ⇒ 674㎡ 수정
 - 잔디블럭 관급 단가 수정 : 47,000원/㎡ ⇒ 44,600원/㎡
 - 배수공 : 공공하수관 접합 위치 및 배수계획 재검토
 - 배수계획종단면도 수정 및 작성 : 공공하수관 접합위치 변경
 - 맨홀(뚜껑포함) 자재 단가 : 1,590천원 ⇒ 395천원
 - 스틸그레이팅 : 관급구매 및 단가조정(58,300원 ⇒ 37,400원)

○○○공원 경관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조경시설물공 : 휴게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1식
- 수목식재공 : 단풍나무 외 17종, 왕벚나무 외 6종
- 조경포장공 : 소형고압블럭포장 외 2종, 경계석설치, 우배수공
- 부 대 공 : 토사운반, 기존철거 및 보수, 폐기물처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419,326	397,236	22,090	5.3%

■ 심사내용

○ 조 경

- 일위대가 변경
 - 제2호표 목재계단 설치 : 일위대가표와 수량산출서 수량일치
 - 제12~17호표 교목이식 : 부속톱밥퇴비 20KG/포 → 15KG/포 변경
 - 제19호표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 토사터파기, 잔토처리, 혼합골재포설 삭제
 - 제20호표 소형고압블록 포장 : 토사터파기, 잔토처리, 혼합골재포설 삭제
 - 제27호표 집수정 : 기성품으로 변경
 - 제45호표 시이소 철거 : 공정에서 누락된 목재시설해체 공정 추가
 - 제63호표 EGI 웬스 : 높이수정(4M→3M), 연장수정(180.4M → 95M)

- 제84호표 교목굴취 : 굴삭기(무한궤도) 삭제
- 제88호표 소형고압블럭 설치 : 곡선부 지장물 5%이상 → 직선부 지장물 5%미만 설치품으로 변경
- 수량산출 변경
 - 토사운반 수량 1057.36m³ → 710.57m³ 변경
 - 포장구간 터파기, 잔토처리, 혼합골재포설 중복 적용 제외
 - 철거품 수량 조정
 - 상수관 터파기 직각 터파기로 수량 변경
- 관급자재단가 변경
 - 스틸그레이팅(995*395*t44) 개당 51,200원 → 36,240원 적용
 - 스틸그레이팅(1,000*50) 개당 7,300원 → 6,190원 적용
- 사급자재단가 변경
 - 일반배관용STS관 M당 6,930원 → 6,435원 적용
 - 철못 KG당 1,110원 → 850원 적용
 - 외송각재 m³당 389,480원 → 330,480원 적용
 - 내수합판 m²당 9,040원 → 7,740원 적용
 - 아세틸렌 KG당 9,500원 → 8,075원 적용
 - 고재공제 KG당(철 420원 → 475원 / STS 1,900원 → 2,100원)
- 폐기물+건축
 - 설계내역 변경(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단가 수정 TON당 121,300원 → 77,210원 변경 적용
 - 일반관리비 및 이운 삭제, 철거품 수량 조정
 - 설계내역 변경(건축)
 - 모래 m³당 21,000원 → 17,000원 변경 적용
 - 일위대가 제1호표 이동식강관말비계 3개월, 1단(2M) :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바퀴, 자키 개당 0.36 → 0.24 적용

○○○○○ 조경 및 심터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우배수공사, 철거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529,176	480,964	48,212	9.1%

■ 심사내용

- 자재단가 : 합판(내수합판, t12mm) 11,412원 → 7,740원
- 일위대가
 - 소나무(둥근형), 측백나무 식재 : 지주목 세우지 않을 때 인력품 20% 감
 - 트렌치설치(138호표) 대가 삭제
 - 콘크리트경계석 철거 : 현장여건상 경계석 철거에 필요 없는 공정인 터파기 및 되메우기 삭제
 - 녹지경계석 설치 : 현장여건상 녹지경계석 설치에 필요 없는 공정인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대가 삭제
 - 소나무 전정 : 전정 인력품을 일반전정 인력품으로 변경
 - 수목제거 : 수목제거에 굴취품을 적용하였으나, 수목제거 후 폐기물 처리하는 작업특성상 기계굴착 품을 적용
- 공법변경 : 시공범위가 넓은 현장여건을 감안 아스팔트철거(t=10cm)후 아스팔트포장(t=10cm) 공법을 아스팔트절삭(t=5cm)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변경

○○○ 석축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토 공 : 터파기 810㎡, 되메우기 540㎡, 사토 270㎡
- 석 축 공 : H=2.5m, L=540m(양안)
- 부 대 공 :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442,692	340,300	102,392	23.1%

■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 산재보험료 3.6% → 3.7%
- 재료비(사급자재대)
 - 내수합판(12T) ㎡당 11,472원 → 7,740원
 - 철못 75mm kg당 1,000원 → 850원
- 단가산출근거
 - 켄잡석 찰쌓기 일위대가(인력 → 인력+장비)
 석공 0.2인 → 0.06인, 보통인부 0.2인 → 0.03인
 장비 굴삭기(0.6㎡) 0.24hr
- 수량산출서
 - 켄잡석 1,489㎡ → 1,446.2㎡, 레미콘 415.23㎡ → 408.38㎡

○○○ 다목적 선박 접안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잔교 계류말뚝 제작설치 4개소
 - 연락교(L=34M×B=25M) 1개소
 - 수중굴착 10,697m³
 - 기타시설(방충채 및 난간 설치 등)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428,000	1,361,000	67,000	4.7%

■ 심사내용

- 자재단가 변경
 - H형강(H-200×200×8×12) : 990,000원 → 923,860원
 - H형강(H-100×100×6×8) : 980,000원 → 923,860원
 - STEEL PLATE(12.0<T≤20.0) : 1,159,000원 → 1,132,000원
- 단가산출 변경
 - #13 항타장비 회항비
 - 보조장비 피예인비 : T=43.98hr → T=7.81hr
 - #16 수중굴착(이토층 N=4이하)
 - 준설선 취업 : 조합기중기선40톤(크램셀 1.53m³) → 조합기중기선80톤(크램셀 2.68m³)

- 양묘선 취업 : 양묘선 22.4kW → 양묘선 7.5kW
- 연락선 취업 : 767.1원/m³ → 0원/m³
 - ※ 준설위치가 육지로부터 근거리(50m 내외)이므로 미계상
- #17 수중굴착(풍화토층 N=4~8)
 - 준설선 취업 : 조합기중기선40톤(크램셀 1.53m³) → 조합기중기선80톤(크램셀 2.68m³)
 - 준설선 취업 : f=1.0 → f=0.95
 - 양묘선 취업 : 양묘선 22.4kW → 양묘선 7.5kW
 - 연락선 취업 : 767.1원/m³ → 0원/m³
 - ※ 준설위치가 육지로부터 근거리(50m 내외)이므로 미계상
- #26 기초굴착(퇴적토 N=4이하)
 - 굴삭기(무한궤도 1.0m³) : f=0.75 → f=1.0

○○○비법정도로 및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스콘 덧씌우기 L=2,664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287,330	209,719	77,611	27.0%

■ 심사내용

- 아스콘 덧씌우기 두께 : 기존 7.5cm → 5.0cm
 - 덧씌우기 구간 포장두께 설계는 CBR에 의한 방법, 유효포장 두께지수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 되고 있으나,
 - 본 과업에서는 CBR에 의한 방법으로 포장두께를 산정하였고, 설계 CBR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CBR의 최대계수 10으로 적용 설계되었으며,
 - 그 결과 포장두께 5.0cm일 경우 TA0=14.8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도로의 위치가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등의 교통량이 많지 않으므로 아스콘 표층 덧씌우기 포장 두께는 5.0cm로 결정
- 아스콘 덧씌우기 : 포장두께에 따른 자재, 운반수량, 덧씌우기 단가 변경



Ⅲ. 부 록

1.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계약심사 운영요령)
3. 분야별(공사·용역·물품) 참고자료

1.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 2009-05-04 규칙 제2689호]

[개정 2012-11-09 규칙 제282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다. 시 의회사무처

라. 시의 지방공기업

마. 시의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바. 군·구

제3조(심사 대상사업) ①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개정 2012-11-9>

-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 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개정 2012-11-9>

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② 제1항의 경우 군·구의 대상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에 한한다.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전년도 평균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시행한 사업<개정 2012-11-9>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신설 2012-11-9>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2-11-9>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의 적정성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 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인천광역시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9 규칙 제2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p>○ 공사개요 :</p>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설계CAD도면, 시방서, 과업지시서) 2. 설계내역서(일위대가서,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근거) 3. 구조계산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1~3항의 설계프로그램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용근거 등) 7.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 출 금액	원		
구 매 예 정 일자			
계 약 방법			
수의계약시 계 약 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예 정 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 :)
○ 구매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가격조사 근거서류 포함)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엑셀양식)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별지 제6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항의 전산화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 부터 “라”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 (이하 “제조·구매·복구 등” 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 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 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 실행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 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3% 범위 안에서 7개, 0% ~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 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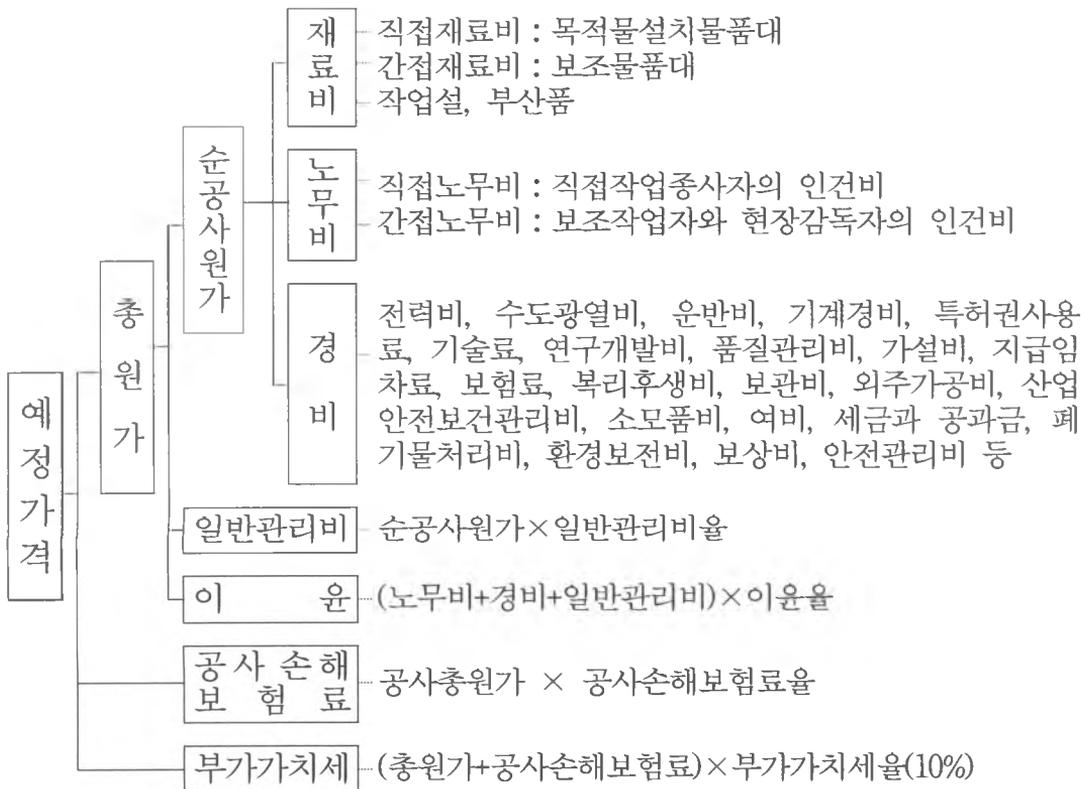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 과 제2관 “4” 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간접노무비율=(15% + 17% + 14.5%) / 3=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

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 와 제3관 “5-가” 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 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text{공사 손해보험료} = \text{총공사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 을 준용한다.

다. “가” 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 와 제3관 “6” 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 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 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 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 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 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 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 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 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 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 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 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
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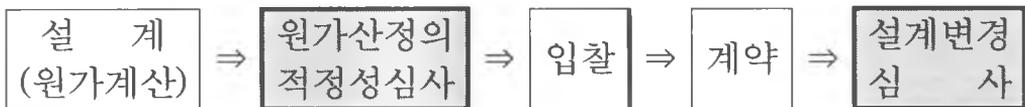
계약심사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 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의 대상 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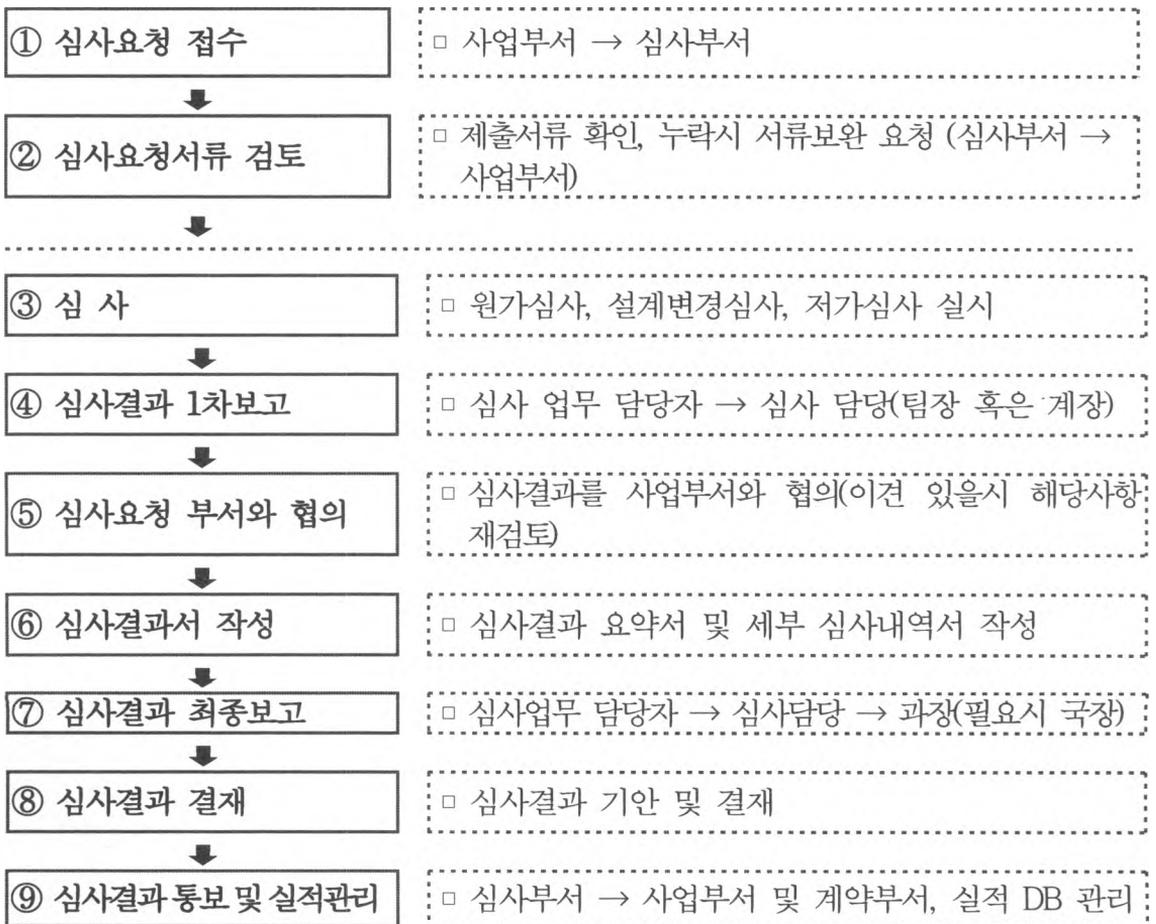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 부터 “5)” 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 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4) 그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 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 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제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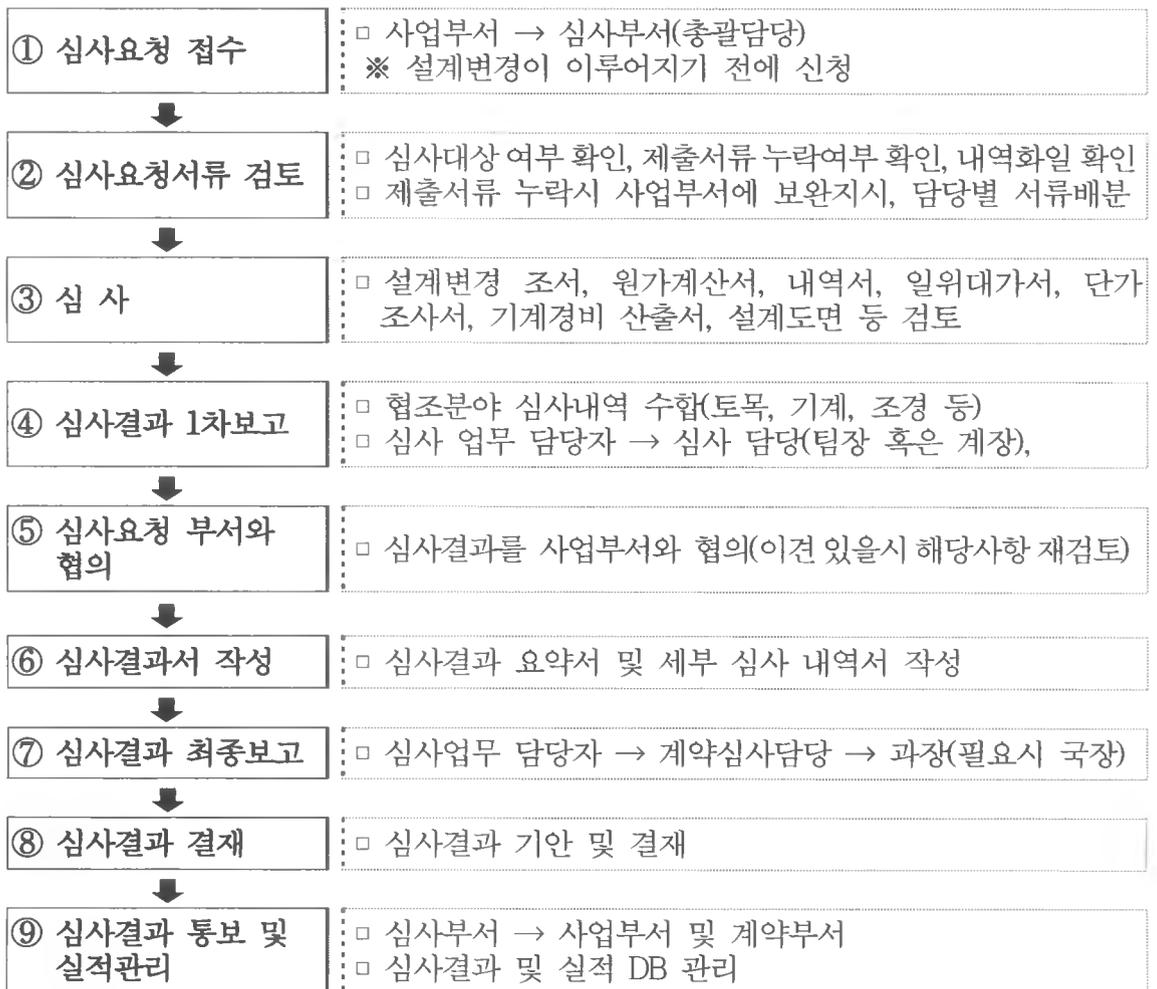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원(사·군·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 안 통 과	수 정	재 검 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횡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 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 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공 사 명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륜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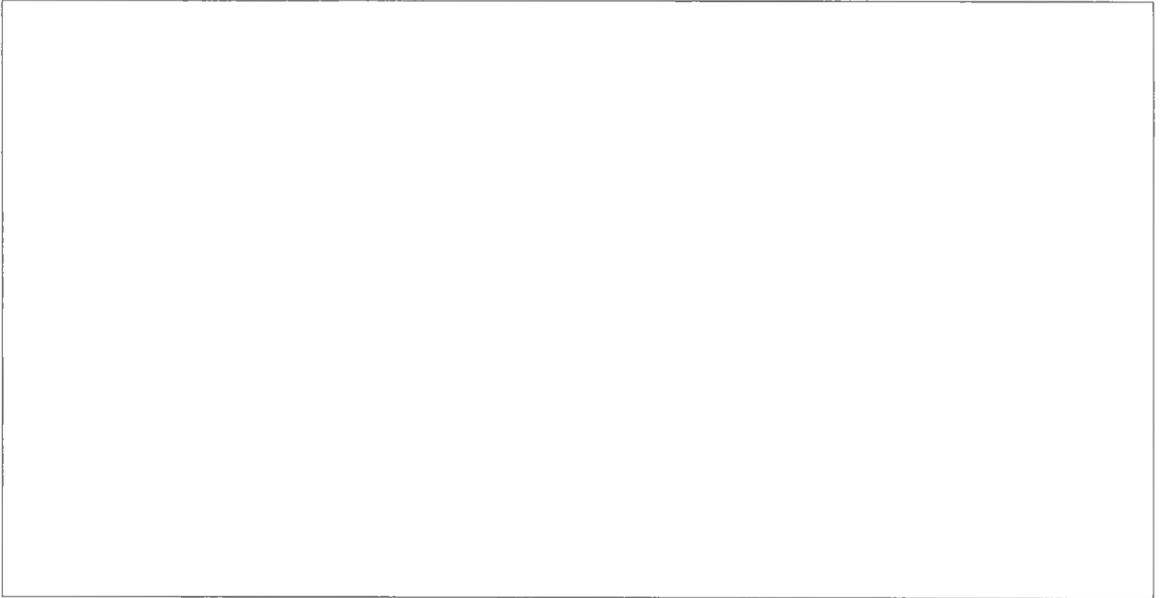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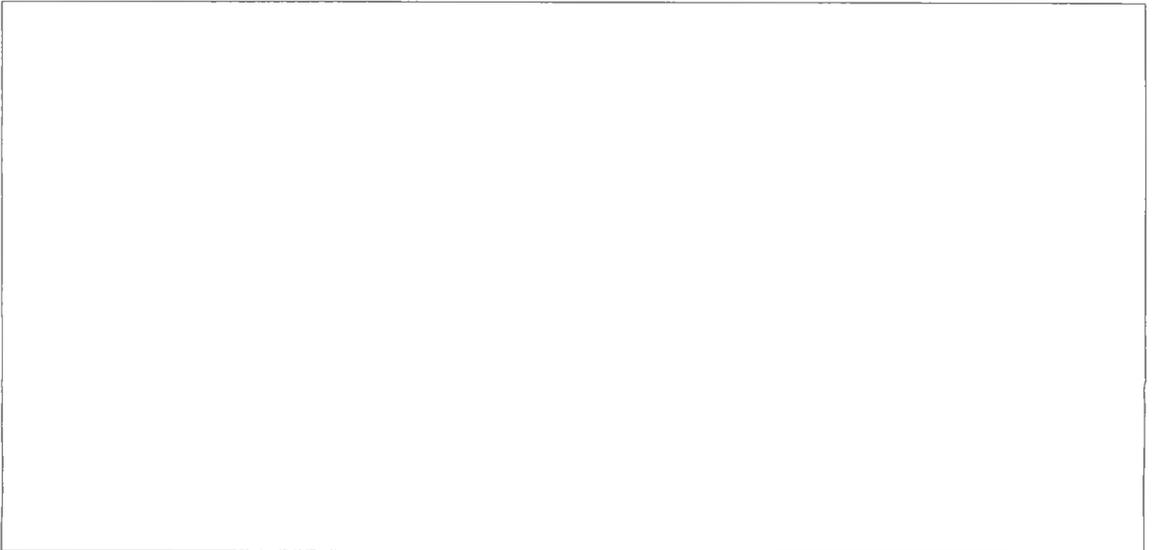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역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제조원가계산서

- | | |
|---------|----------|
| ○ 품 명 : | ○ 수 량 : |
| ○ 규 격 : | ○ 제조기간 :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협조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격 : 2. 색도 : 3. 면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건 명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조					

공 사 명		요청 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	--

3. 분야별(공사 · 용역 · 물품) 참고자료

공사분야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 · 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2.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해양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설계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해양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자체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토해양부도로공사발간 설계지침
- 자치단체 자체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국립지리원)
- 엔지니어링노임단가(지식경제부)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사회보험료율(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정공사 적산기준(조정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견적기준

8. 관련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

-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환경부 등)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http://www.kict.re.kr>)
- 관련기관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 한국건설감리협회 (<http://www.gamri.or.kr>)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http://www.kenca.or.kr>)
 - 한국전기공사협회(<http://www.keca.or.kr>)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 한국건설자원협회(<http://www.koras.org>)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 한국조경수협회(<http://www.klta.or.kr>)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 한국지반공학회 (<http://www.kgshome.org>)
 -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
 - 금융결제원(<http://www.kftc.or.kr>)
 - 서울외국환중개(주) (<http://www.smbs.biz>)

용역분야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2. 기타자료

- 조달청(www.pps.go.kr) 시설분야용역 대가산정기준(공통표준모델)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해양부)
- 각종 원가산정 자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문화재청 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물 품 구 매 분 야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등)

2. 인쇄물기준요금 폐지에 따른 기초금액 책정 방안(조달청, 2011. 5. 31)

- 동일(유사)한 구매(계약)사례가 있는 경우
 - 최근 구매(계약) 사례건의 기초금액 수준으로 적용하되 계약수량, 물가 및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
 - ⇒ 거래실례가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활용
-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 자체 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가격을 참고하여 결정
 - ⇒ 재료비, 조판비, 필름출력비 등 각 항목별로 가격 조사 실시
- 3개월 이내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판단 후 결정

3. 기타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